**사건위임계약서**

**위임인(갑) :** **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**

**수임인(을) : 법무법인(유한) 엘케이비앤파트너스 (L.K.B ＆ Partners LLC)**

**사건의 표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사건번호** | **-** | **사 건 명** |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 |
| **당사자**  **(원고)** | **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** | **상대방**  **(피고)** |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|

갑과 을은 위 당사자(원고)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(피고)을 상대로 2025. 4.경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배상금(보상금,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, 현금 지급,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)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 위임하는 법률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행위(심급 불문)

② 소송외 행위(소송외 청구, 지급절차, 지급금액, 지급방법 등에 관한 협상 및 합의)

③ 배상금(보상금,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, 현금 지급,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) 수령 행위

**제1조【목 적】**

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(이하 “위임사무”라 한다)를 위임하고, 을은 이를 수임한다.

**제2조【수임인의 의무】**

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,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3조【자료제공 등】**

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4조【착수보수】**

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**금 이만원(\20,000)**을 지급한다.

② 갑은 본 계약이 을과 다수 위임인 사이 체결되는 사건의 일부로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의 그러한 성격에 따라 을이 착수보수를 소액으로만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, 그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.

**제5조【성과보수】**

① 갑은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상금(보상금,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, 현금 지급,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)의 **15%**(부가가치세 별도)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.

②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.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, 소의 취하, 상소의 취하, 또는 합의를 한 경우

2. 상대방이 인낙한 경우

3.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, 제7조에 따라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

**제6조【추심 및 합의 권한】**

갑은 위임사무와 관련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 및 합의를 을에게 위임한다. 을은 갑을 대리하여 을에게 추심 및 합의 권한이 있음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.

**제7조【비용부담】**

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, 송달료 등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
**제8조【계약해지】**

① 갑이 자료제공 의무 등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, 갑의 고의 또는 과실 불문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보수를 반환하지 않는다.

② 갑은 본 계약이 을과 다수 위임인 사이 체결되는 사건의 일부로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의 그러한 성격에 따라 을이 착수보수를 소액으로만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, 그에 따라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배상금(보상금, 합의금 등 명목 불문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원으로서, 현금 지급, 통신요금과 상계 등 지급 방법은 불문한다)에 대해 제5조가 정한 바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.

**제9조【인장조각】**

본 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(전자적 방식 포함)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0조【수임 동의】**

갑은 본 계약이 을과 다수 위임인 사이 체결되는 사건의 일부로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의 그러한 성격에 따라 을이 착수보수를 소액으로만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, 그에 따라 갑 및 본 사건을 수행하는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또는 갑을 상대방으로 하는 다른 사건을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.

**제11조【개인정보 제공 동의】**

갑은 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갑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고, 통신사 가입정보, 착수보수 및 성과보수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.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법원 등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**제12조【손해배상】**

위임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착수보수를 한도로한다.

**제13조【계약의 성립】**

본 사건위임계약은 본 사건위임계약서에 갑이 날인하고, 을에게 제4조에서 정한 착수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,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및 날인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**제14조【통지】**

을은 본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통지를 갑이 본 사건위임계약 체결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/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**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**

위임인(갑)

이름 (인)

주 소 **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**

전 화 **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**

수임인(을)

**법무법인(유한) 엘케이비앤파트너스 (L.K.B ＆ Partners LLC)**

서울 서초구 법원로 15, 1-5층(서초동, 정곡빌딩 서관)

대표변호사 이광범 (인)